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20

식물위생 수입규제제도 지침

Guidelines for a phytosanitary import regulatory system

2017

FAO/IPPC 사무국

출판 이력

이 부분은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이 아님

1995-09 TC-RPPOs가 수입규제(1995-003)을 주제로 추가

1996-1997 IPPC 사무국이 초안을 작성

1997-10 CEPM-4가 초안을 수정을 요청

1998-05 CEPM-5가 초안을 재검토

2000-05 ISC-1이 초안 재작성을 요청

2001-05 ISC-3이 전문가 작업단이 초안을 재작성 할 것을 권고

2002-04 전문가작업단이 초안을 작성 국 의견수렴을 위하여 승인함

2002-11 SC가 감귤게양병 관련 문제를 논의하여 제출됨

2002-2003 소규모 작업그룹이 이메일을 통하여 초안을 수정

2003-05 SC-7이 초안을 수정하고 회원국 의견수렴을 승인

2003-05 1차 회원국 의견수렴

2003-11 SC가 채택을 위하여 초안을 수정

2004-04 ICPM-6이 기준을 채택

ISPM 20. 2004. *식물위생 수입규제제도 지침*, Rome, IPPC, FAO.

2013-08 IPPC 사무국이 CPM-8(2013)에서 인지한 미미한 수정(ink amendments)을 적용

2014-05 IPPC 사무국이 목차의 실수를 수정

2015-06 IPPC 사무국이 미미한 수정을 포함시키고 CPM-10(2015)에서 기준 절차 폐지에 따라 기준을 개량(reform)

2005-04 CPM-7은 ‘규제병해충에 대한 현지검역(pre-clearance)’ 주제를 추가 (2005-003)

2006-01 회원국 의견수렴을 위하여 작업지시서 초안이 제출됨

2006-11 SC가 작업지시서를 승인

2008-09 전문가작업단이 부속서 초안 작성

2011-05 SC가 초안을 검토하고 간사에게 돌려보냄

2012-04 SC가 초안을 검토하고 추가의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

2012-12 간사가 소규모 SC 그룹과 초안을 수정

2013-05 SC가 현지검역과 관련된 개념이 명확해질 때까지 검토를 연기함

2014-05 SC가 현지검역과 관련된 개념을 논의

2014-11 SC가 현지검역과 관련된 개념 및 정의를 논의

2015-05 SC가 초안을 회원국 의견수렴을 위하여 승인

2015-07 1차 회원국 의견수렴

2016-02 간사가 의견을 검토하고 초안을 수정

2016-05 SC-7이 ISPM 20의 부속서 초안을 회원국 의견수렴을 위하여 승인

2016-07 2차 회원국 의견수렴

2016-11 SC가 초안을 수정하고 CPM-12(2017)에 채택을 권고

2017-04 CPM-12가 ISPM 20 부속서 1을 채택

ISPM 20. **Annex 1.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 확인을 위한 협의 (arrangements)**(2017). Rome, IPPC, FAO.

출판 이력은 2017.4월 최종 업데이트됨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판하였다.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 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하였다."

"본 출판에서 사용한 명칭과 자료들의 표현은 어떠한 국가, 영토, 도시 혹은 지역
이나 이들의 정부당국, 또는 이들 국경 및 경계에 대한 한계와 관련하여 UN
FAO 측의 어떠한 의견의 표현도 암시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제조업체의
상품에 대한 혹은 이들이 특허권이 주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이들을 언급
되지 않은 유사한 유형을 가진 다른 것들보다 선호되어 FAO에서 이들을 보증
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합의에서 표현된 의견은 저자의
의견이며 반드시 FAO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18 (한국어 번역)"

"© FAO, 1995-2018 (영문판)"

차 례

채택

서 론

범위

참고문헌

용어정의

요건의 개요

요건

1. 목적

2. 구성요소

3. 권한, 의무 및 책임

3.1 국제협약, 원칙 및 기준

3.2 지역협력

4. 규제외 틀

4.1 규제물품

4.2 규제물품에 대한 식물위생조치

4.2.1 수입될 화물에 대한 조치

4.2.1.1 특별 수입에 대한 규정

4.2.1.2 병해충무발생 지역,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 병해충저발생 지역 및 공적방제 프로그램

4.2.2 수입허가

4.2.3 금지

4.3 경유화물

4.4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 관련 조치

4.5. 규제외 틀을 요구할 수도 있는 여타 요소

4.6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의 법적 권한

5.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운영

5.1 NPPO의 관리 및 운영상 책임

5.1.1 행정

5.1.2 규제 개발 및 개정

5.1.3 예찰

5.1.4 병해충위험분석 및 병해충 목록화

5.1.5 감사 및 이행 절차

5.1.5.1 수출국에서의 절차 감사

5.1.5.2 수입 시 이행 확인

5.1.5.2.1 검사

5.1.5.2.2 표본추출

5.1.5.2.3 실험실검사를 포함한 정밀검사

5.1.6 위반사항 및 긴급

5.1.6.1 위반 시의 활동

5.1.6.2 긴급활동

5.1.6.3 위반 및 긴급활동의 보고

5.1.6.4 철회 또는 규정의 수정

5.1.7 NPPO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허가 시스템

5.1.8 국제 연락(liasion)

5.1.9 규제정보의 통보 및 배부

5.1.9.1 신규 또는 수정된 식물위생 규정

5.1.9.2 결정된 규정의 배부

5.1.10 국내 연락(liasion)

5.1.11 분쟁해결

5.2 NPPO의 자원

5.2.1 직원, 훈련포함

5.2.2 정보

5.2.3 장비 및 시설

문서화, 의사소통과 검토

6. 문서화

- 6.1 절차
- 6.2 기록

7. 의사소통

8. 검토 기작

- 8.1 제도 검토
- 8.2 사례검토

부속서 1: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 확인을 위한 합의 (arrangements) (2017)

1. 합의문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
2. 합의문 작성 하는 절차
 - 2.1 제안
 - 2.2 평가
 - 2.3 요인
 - 2.4 기술적 요건
3. 합의문의 이행
4. 합의문의 재검토
5. 합의문의 종료

채택

이 기준은 2004년 3-4월 ICPM(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서론

범위

이 기준은 식물위생 수입규제제도의 구조와 운용 및 그 제도를 설정, 운영 및 개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권리, 의무와 책임을 기술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 기준은 ISPMs를 참고한다. ISPMs는 IPP <https://www.ippc.int/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s>에서 찾을 수 있다.

IPPC. 1997.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Rome, IPPC, FAO.

WTO. 1994.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용어정의

본 기준에 사용된 식물위생 용어는 ISPM 5(식물위생 용어집)에 기술되어 있다.

요건의 개요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목적은 수입되는 화물 및 여타 규제물품과 함께 검역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있다. 수입규제 제도는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 식물위생 법령, 식물위생 규정, 식물위생 절차에 대한 규제 틀과 그 제도에 대한 운영과 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식물보호기관(NPPO). 법적인 틀은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NPPO의 법적 권한을 포함 한다; 다른 식물위생조치(금지 포함)는 수입 상품과 다른 규제물품 관련; 위반사항 또는 긴급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견되었을 때 행해질 수도 있는 식물위생 활동. 경유화물에 관한 식물위생 조치도 포함될 수도 있다.

수입규제 체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NPPO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한 예찰, 검사, 방제(disinfestation) 및 소독, 병해충위험분석의 실시 및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개발훈련과 관련한 IPPC의 제4조2항에 있는 책임을 포함한다. 이 책임은 행정, 감사, 이행 확인,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긴급 활동, 사람에 대한 권한부여, 분쟁해결과 같은 분야의 관련 기능을 포함한다. 추가로 체약국은 NPPO에 규제개발 및 수정과 같은 다른 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다. NPPO의 자원(resources)은 이러한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국제적 및 국내적 연락(liaison), 문서화, 의사소통 및 검토를 위한 요건이다.

요건

1. 목적

식물위생 수입규제 체도의 목적은 수입되는 화물 및 여타 규제물품과 함께 검역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있다.

2. 구성요소

식물위생 수입규제 체도의 요소:

- 식물위생 법령, 식물위생 규정, 식물위생 절차에 대한 규제 틀
- 동 체도의 운영에 대해 책임이 있는 NPPO.

법적, 행정적 제도와 구조는 체약국간에 다르다. 특히, 어떤 법률제도는 법률 내에 공무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경우는 공무원이 크게 행정적인 절차를 통하여 그들의 기능을 수행할 위임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기준은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규제적인 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규제의 틀은 제4항에서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NPPO는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운영 또는 감독(조직 및 관리)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이다. 세관과 같은 다른 정부기관은 수입된 상품의 일부 통제 역할(책임과 기능의 규정된 분리)을 할 수 있으며, 연락(liaison)이 유지되어야 한다. NPPO는 종종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한정된 기능에 대하여 기관을 대신하거나 또는 그의 통제 하에 활동할 다른 적절한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또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도의 운영은 제5항에서 기술한다.

3. 권한, 의무 및 책임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함에 있어, NPPO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관련 국제조약, 협약 또는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의무 및 책임
- 관련 국제기준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의무 및 책임
- 국가 법령 및 정책
- 정부, 부처 또는 국 또는 NPPO의 행정 정책

3.1 국제협약, 원칙 및 기준

국가 정부는 자국의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준을 고려하면서 수입을 규제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협정 특히 IPPC와 WTO/SPS(WTO, 1994) 협정으로부터 유래한 원칙이나 기준뿐만 아니라 국제협정과 관련된 권리, 의무 및 책임은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구조와 이행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는 식물위생 수입규정의 작성과 채택, 적용 및 그 규정에서 유래한 운영상의 활동에 대한 영향이 포함된다.

규정의 작성, 채택 및 적용은 다음을 포함하는, ISPM 1(*식물보호를 위한 식물위생 원칙과 국제교역에서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과 같은 특정 원칙과 개념의 인정을 요구한다.

- 투명성

- 주권
- 필요성
- 비차별
- 최소 영향
- 조화
- 기술적 정당성(병해충위험분석을 통한 것과 같은)
- 일관성
- 관리된 위험
- 수정
- 비상활동 및 임시조치
- 동등성
- 병해충무발생지역 및 저발생지역

특히, 식물위생 절차와 식물위생 규정은 최소한 영향 개념과 불필요한 무역장해를 회피하기 위한 경제적, 운영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3.2 지역협력

지역식물보호기구(RPPOs)와 지역 농업개발기구와 같은 지역기구들은 소속 회원국들의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조화를 촉구할 수도 있으며,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에 협력할 수도 있다.

FAO에 의해 인정된 지역 경제통합기구는 소속 회원국들에게 적용할 규칙을 가질 수도 있으며, 또한 그 기구의 회원국들을 대신하여 특정한 식물위생 규정을 제정·시행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4. 규제의 틀

규정을 공포하는 것은 정부(체약국)의 책임이다(IPPC 제4조 3c항). 그 책임과 일관성이 있도록 체약국은 NPPO에게 식물위생상 수입규정의 작성과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시행에 대한 권한을 제공할 수도 있다. 체약국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수입규제 제도와 관련된 NPPO의 책임과 기능에 대한 설명서(specification)

- NPPO가 수입규제 제도와 관련하여 그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
- 수입식물위생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PRA를 통하는 것과 같은 권한과 절차
- 수입된 상품과 다른 규제물품에 적용할 식물위생조치
- 수입된 상품과 다른 규제물품에 적용할 수입금지
-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
- NPPO와 다른 정부기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서
- 규정의 발효를 포함하는 규정 이행에 대한 투명하고 정의된 절차 및 시한

체약국은 IPPC 제7조2b항에 따라 규정을 가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진다; 이 절차는 규제 근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4.1 규제물품

규제될 수 있는 수입상품은 규제병해충에 감염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규제병해충은 검역병해충이나 규제비검역병해충이다. 모든 상품은 검역병해충을 이유로 규제될 수 있다. 식용 또는 가공용 상품은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이유로 규제될 수 없다. 규제비검역병해충은 재식용 식물과 관련하여서만 규제될 수 있다. 규제물품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재식용, 식용, 가공용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식물 및 식물성 산물
- 보관 시설
- 받침목을 포함한 포장재
- 수송 및 운송시설
- 흙, 유기질 비료 및 관련 물질
- 병해충이 숨거나 전파될 수 있는 생물체
- 잠재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장비(중고 농업용, 군용과 지표면을 이동하는 장비)
- 연구 및 다른 과학적 물질
-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여행자의 개인 소지품
- 병해충 및 생물적 방제제¹⁾

규제물품의 목록은 공개되어야 한다.

1) 그 자체로서 병해충과 생물학적 방제제는 “규제물품”의 정의(IPPC 2.1조) 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술적인 정당성이 있을 경우, 이들은 식물위생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규제병해충과 관련된 IPPC 4조, 7.1(c), 7.1(d)와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해서 규제물품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4.2 규제물품에 대한 식물위생조치

체약국은 식물위생조치가 식물위생상의 고려에 의해 필수적이고 기술적인 정당성이 없다면, 금지, 제한, 또는 다른 수입요건과 같은 규제물품에 대한 반입에 대한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해서는 않된다. 체약국은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할 때 적절한 경우 국제기준과 기타의 관련 요건과 IPPC의 고려사항을 참작해야한다.

4.2.1 수입될 화물에 대한 식물위생조치

식물위생 규정은 식물 및 식물성 산물과 다른 규제물품의 수입화물²⁾이 따라야 할 식물위생조치를 기술해야한다. 이러한 식물위생조치는 모든 화물의 유형에 적용될 경우 일반적일 수도 있으며, 또는 그 조치가 특정 원산지산 특정 화물에 적용될 경우에는 특이할 수 있다. 식물위생조치는 반입 전, 반입 시 또는 반입 후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경우 시스템적 접근이 이용될 수 있다(ISPM 14(병해충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에서 종합적 조치의 사용) 참조).

수출국의 NPPO의 증명(ISPM 7(수출증명시스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식물위생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수출 전 검사
- 수출 전 실험실 검사
- 수출 전 소독처리
- 특정한 식물위생 상태의 식물체에서 생산된(예를 들면, 바이러스 검정을 거친 식물로부터 재배되거나 또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재배된)
- 수출 전 재배기간 중 검사 또는 실험실 검사
-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 병해충저발생 지역 또는 무발생지역으로 되기 위한 화물의 원산지
- 인증절차
- 화물의 완전성(integrity) 유지

2) 이 기준의 목적에 따르면 수입은, 무역자유지역(면세지역과 보세창고를 포함) 내 이동과 다른 기관에 의해 유치된 불법 화물을 포함하여, 한 국가로 들어오는(경유 제외) 모든 화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선적 중에 요구될 수도 있는 식물위생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됨:

- 소독처리(예를 들면, 적절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 화물의 완전성 유지

반입 시 요구될 수 있는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 문서확인
- 화물의 완전성 확인
- 선적 중 소독처리 입증
- 식물위생 검사
- 실험실 검사
- 소독처리
- 소독처리 효과에 대한 정밀 검사 또는 입증 결과를 보류하는 화물의 유치

반입 후 요구될 수도 있는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

- 검사, 정밀 검사 또는 소독처리를 위한 검역 상 유치(예 : 격리재배검역장)
- 특정한 조치를 보류하는 지정된 장소에의 유치
- 화물의 분포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예: 특정한 가공)

여타의 필요할 수도 있는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

- 면허 또는 허가를 위한 요건
- 특정한 화물에 대한 반입지점의 제한
- 수입자가 특정한 화물의 도착 전에 통지하는 요건
- 수출국에서의 절차에 대한 감사
- 현지검역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는 평가와 수출국에 의해 제안된 대안적 식물위생조치를 동등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한다.

4.2.1.1 특별 수입에 대한 규정

체약국은 과학적 연구, 교육 및 여타의 목적을 위하여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제 (ISPM 3(생물학적 방제제와 다른 유용 생물체의 수출, 선적, 수입과 방사 지침)

참조) 또는 다른 규제물품의 수입을 위한 특별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입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허가되어질 수 있다.

4.2.1.2 병해충무발생 지역,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 병해충저발생 지역 및 공적방제 프로그램

수입 체약국은 자국 내에서 병해충무발생 지역, 병해충저발생 지역(ISPM 4 (병해충무발생 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ISPM 22(병해충저발생 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ISPM 29(병해충무발생 지역과 저발생지역 인정) 및 공적방제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식물위생 규정은 수입국 내에서 그와 같은 지정을 보호하거나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비차별원칙을 존중하여야한다.

식물위생 수입규정은 그와 같은 지정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 수출체약국의 국가 내에서의 여타 공식절차(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및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과 같은)와 관련된 지정의 존재를 인정해야한다. 다른 NPPO에 의한 지정을 평가·승인하고 회신하기 위하여 식물위생 규제제도 내에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4.2.2 수입허가(import authorization)

수입허가는 일반적인 허가과 같이 또는 사안 별로 특정한 허가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일반 수입허가

일반 수입허가는 다음을 사용할 수도 있다:

- 특별한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 다양한 화물에 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입을 허가하는 특정한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일반적인 수입허가는 면허나 허가서를 요하지 않으나, 수입 시 확인을 받아야한다.

특정 수입허가

특정 수입허가는, 필요한 경우 수입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이 예를 들면 허가서의 형태로 요구될 수 있다. 이것은 개별적인 화물 또는 특정한 원산지의 일련의 화물에 대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허가가 요구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을 포함한다:

- 긴급 또는 예외적 수입
- 격리검역 요건 또는 지정된 최종 용도 또는 연구목적과 같은 특별하고 개별적인 요건을 가진 수입
- 반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추적하는 능력을 NPPO가 요구하는 수입

일부 국가는 일반적인 수입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허가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러나, 유사한 특별한 허가가 일상적으로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허가의 개발이 권장된다.

4.2.3 금지

수입금지는 모든 원산지의 특정한 상품 또는 모든 원산지로부터의 여타의 규제 물품 또는 특별히 특정한 원산지의 특정한 상품 또는 여타의 규제물품에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수입금지는 병해충위험관리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사용되어야한다. 금지는 기술적으로 정당해야한다. NPPO는 동등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러나, 무역에 덜 제한적인- 규정을 제정해야한다. 체약국은 그와 같은 조치가 자국의 적정보호수준을 충족한다면,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자국의 NPPO를 통해 자국의 식물위생 수입규정을 수정해야한다. 금지는 검역병해충에 적용한다. 규제비검역병해충은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설정된 병해충 허용치를 따라야한다.

금지품은 연구용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할 수 있으며, 면허 또는 허가 제도를 통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포함한 제한된 조건 하에 그들의 수입을 위한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4.3 경유화물

경유화물은 수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는 경유화물을 포함하고,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정당한 조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다(IPPC 7.4조, ISPM 25(경유화물)). 화물을 추적하고, 그들의 완전성(integrity)을 입증하며, 화물이 경유국가를 떠남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국가들은 자국 내의 반입지점과 자국 내 경로, 자국 영토 내에서 허가된 운송의 조건 및 시간범위를 정할 수 있다.

4.4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 관련 조치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는 최소 충격의 원칙을 고려하면서, 위반사항 또는 긴급활동 시 취해진 식물위생활동(IPPC 7.2(f)조; 자세한 정보는 ISPM 13(위반사항과 긴급활동 통보 지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수입화물 또는 여타의 규제물품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최초 반입이 거절되는 경우 취해질 수도 있는 식물위생 활동은 다음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소독처리
- 선별 또는 재손질(reconditioning)
- 규제물품(장비, 장소, 보관지역, 운송수단 포함) 감염제거
- 가공과 같은 특정한 최종용도에 대한 지시
- 재선적
- 폐기(소각과 같은)

위반사항 또는 긴급활동을 요하는 건의 발견은 식물위생 수입규정의 개정, 수입허가의 취소 또는 중단을 가져올 수 있다.

4.5 규제의 틀을 요구할 수도 있는 여타 요소

국제협정은 법적인 근거를 요하거나 또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될 수 있는 의무를 야기한다. 그러한 절차를 요하는 협의에는(arrangements) 다음이 포함된다.

- 위반 시의 통보
- 병해충 보고
- 공식적인 접촉창구의 지정
- 규제정보의 공표 및 배부
- 국제적인 협력
- 규정 및 문서의 개정

- 동등성의 인정
- 반입지점에 대한 설명서
- 공식적인 문서의 통보

4.6 NPPO의 법적 권한

NPPO가 그 책임(IPPC 4조)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NPPO의 직원 및 여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권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수입상품, 규제병해충 또는 여타의 규제물품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 수송 수단 및 여타의 장소에 출입
- 수입상품 또는 다른 규제물품의 검사 및 실험실검사
- 수입상품 또는 다른 규제물품으로부터 또는 규제병해충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샘플채취하고 가져옴(샘플의 폐기를 가져오는 분석 포함)
- 수입화물 또는 다른 규제물품의 유치
- 수입화물 또는 규제병해충이 있을 수 있는 수송수단, 장소 또는 상품을 포함하는 여타의 규제물품에 대한 소독 또는 소독을 요구
- 화물의 반입 거부, 재선적 또는 폐기
- 긴급활동 실시
- 수입과 관련된 활동 또는 벌칙과 관련된 수수료 설정 및 징수(선택적)

5.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운영

NPPO는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운영과 감독(조직과 관리)에 대해 책임이 있다 (section 2항 참조). 이 책임은 특히 IPPC 4.2조에서 유래한다.

5.1 NPPO의 관리 및 운영상 책임

NPPO는 그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시스템과 자원을 가져야한다.

5.1.1 행정

NPPO에 의한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행정은 식물위생 법령, 규정의 효과적이고

일관적인 적용과 국제적 의무사항에 부합됨을 보장하여야한다. 이는 수입과 연관된 다른 정부기관(government services or government agencies) -예를 들면 세관-과의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행정은 국가차원에서 조정되어야하지만, 기능적, 지역적 또는 여타의 구조적인 토대 위에서 구성될 수 있다.

5.1.2 규제의 개발 및 개정

식물위생 규정의 공표는 정부(체약국)의 책임(IPPC 4.3(c)조)이다. 그 책임과 일치하도록 체약국은 자국의 NPPO의 책임에 관한 식물위생 규정을 개발하고 개정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은 적절한 경우 NPPO의 주도 하에 다른 기관과 협의 또는 협력하여 할 수 있다. 적절한 규정은, 그 국가의 통상적인 법적 및 협의 절차를 통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협정에 부합되게 필요에 따라 개발, 유지, 검토 되어야 한다. 영향 받는 산업계 및 관련 민간분야 단체 뿐 아니라 관련기관과의 협의나 조회는 민간분야의 규제 결정에 대한 이해 및 승인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종종 규정의 개선에 유용하다.

5.1.3 예찰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기술적인 정당성은 규제 국가 내에서 규제병해충의 병해충 상태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병해충 상태는 변화할 수도 있으며, 그로인해 식물위생 수입규제의 개정이 필요 할 수도 있다. 수입국에서 재배되거나 재배되지 않는 식물에 대한 예찰은 병해충 상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되며(ISPM 6(예찰 지침)에 따라), PRA와 병해충 목록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5.1.4 병해충위험분석 및 병해충 목록화

PRA를 통한 것과 같은 기술적인 정당성은, 병해충이 규제되어야 하는가와 그들에 대해 적용될 식물위생조치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ISPM 11(검역병해충을 위한 병해충위험분석); ISPM 21(규제비검역병해충을 위한 병해충위험분석)). PRA는 특정한 병해충 또는 특정 경로(예, 상품)와 관련된 모든 병해충에 대하여 실시될 수 있다. 상품은 가공의 정도와 사용용도에 의해 분류될 수도

있다. 규제병해충은 목록이 작성되어야하며(ISPM 19(규제병해충 목록에 대한 지침)에 따라), 규제병해충 목록은 공표되어야한다(IPPC 7.2(i)조). 만일 적절한 국제기준이 있다면, 조치는 그러한 기준을 고려해야하며, 기술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한 더 엄격하지 않아야한다.

PRA 절차의 행정적인 틀은 가능하다면 개별 PRA 완료에 대한 시한과 우선순서에 관한 명백한 안내와 함께 분명히 문서화되어야한다.

5.1.5 감사 및 이행 절차

5.1.5.1 수출국에서의 절차 감사

식물위생 수입규정은 보통 생산절차(통상 관련 작물의 재배기간 중) 또는 특정 소독처리 절차와 같은 수출국에서 행해져야 할 특정한 요건을 포함한다. 새로운 무역의 개발과 같이 어떤 경우, 수출국의 NPPO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하여 수입국의 NPPO에 의한 수출국에서의 감사를 요건에 포함할 수도 있다.

- 생산제도
- 소독처리
- 검사절차
- 식물위생 관리
- 인증 절차
- 실험실 검사 절차
- 예찰

수입국은 감사의 범위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감사에 대한 협의(arrangements)는 수입 촉진과 관련된 양자 간 협정, 약정 또는 사업 프로그램으로 문서화된다. 그러한 협의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으로 반입 시 최소한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에서의 화물에 대한 통관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감사 절차의 유형은 영구적인 조치로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수출국에서 그 절차가 확인된 직후에는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적용 기간의 제한에 관한 이러한 접근은 5.1.5.2.1항에서 언급한 현행의 현지검역(pre-clearance)와 다를 수도 있다. 감사의 결과는 수출국의 NPPO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5.1.5.2 수입 시 이행 확인

이행 확인을 위한 3가지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문서상 확인
- 화물의 완전성(integrity) 확인
- 식물위생상 검사, 실험실 검사 등

수입화물과 여타 규제물품에 대한 이행 확인은 다음을 위하여 요구될 수 있다.

- 식물위생 규정의 이행 여부를 결정
- 식물위생조치가 검역병해충의 유입 방지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의 유입 제한에 효과적인가를 확인
- 그 상품과 함께 유입이 예견되지 않는 검역병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병해충 검출

식물위생 검사는 NPPO에 의해서 또는 그의 권한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행확인 절차는 신속히 실시되어야 한다(IPPC 7.2(d), 7.2(e)조). 가능한 경우, 이행확인 절차는 무역의 흐름에 대한 방해와 신선한 상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규제에 관여하는 세관과 같은 다른 기관과의 협력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5.1.5.2.1 검사

검사는 입항지, 환적지, 도착지 또는 식물위생상의 완전성이 유지되고 있고 적절한 식물위생 절차가 실시될 수 있음을 전제로 주요한 시장과 같은 수입화물이 확인될 수 있는 기타의 장소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또한, 양자 간 협정이나 약정에 의해, 수출국의 NPPO와의 협력 하에 현지검역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원산지 국가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는 식물위생 검사는 다음에 적용될 수도 있다:

- 반입 조건으로서 모든 화물에 적용
- 모니터링 수준(즉, 검사되는 화물의 수)이 예견된 위험에 근거하여 설정된 경우,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적용

검사와 표본추출 절차는 사전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절차 또는 특정한 절차에 근거할 수도 있다.

5.1.5.2.2 표본추출

식물위생 검사의 목적상 또는 후속의 실험실 정밀검사 또는 참고적 목적으로 화물에서 표본을 채취할 수도 있다(ISPM 31(*화물의 표본추출을 위한 방법론*) 참조)).

5.1.5.2.3 실험실검사를 포함한 정밀검사

정밀검사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

- 육안으로 검출된 병해충에 대한 분류동정
- 육안으로 분류된 병해충에 대한 확인
- 검사에 의해 검출되지 않는 우려되는 감염에 대한 요건의 이행확인
- 잠재적 감염에 대한 확인
- 감사 또는 모니터링
- 특히 위반사항의 경우 참고 목적
- 신고 된 물품의 확인

정밀검사는 적절한 절차에 경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제적으로 합의된 약정에 따라서 수행되어야한다. 관련된 학계 및 국제 전문가나 연구소와의 협력은 정밀검사 결과의 확인이 필요할 때 권장된다.

5.1.6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SPM 13에 포함되어 있다.

5.1.6.1 위반 시의 활동

식물위생 수입규정의 위반에 따라 식물위생 활동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목록에 있는 검역병해충이 규제되는 화물과 관련되어 검출
- 수입된 해당 재식용 식물에서 요구되는 허용치를 초과한 수준의 목록에

있는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검출

- 검사, 실험실 정밀검사, 생산자 또는 시설의 등록, 병해충 모니터링 또는 예찰의 부족과 같은 정해진 요건(양자 간 협정 또는 약정, 수입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증거
- 신고 되지 않는 상품, 흙, 또는 일부 여타의 수입금지품의 존재 또는 특정한 소독처리의 불이행 증거로 인한 것과 같이 수입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화물의 발견
- 무효한 또는 잃어버린 식물위생증명서나 여타의 요구되는 문서
- 금지된 화물이나 물품
- '경유' 조치의 불이행

식물위생 활동의 유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며 확인된 병해충위험에 맞는 최소한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불완전한 식물위생증명서와 같은 행정상의 실수는 수출국 NPPO와의 연락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다른 위반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유치: 이는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 가능한 최대한 화물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이용될 수도 있다.

선별 및 재배치(reconfiguring): 적절한 경우 재포장을 포함한 화물의 선별 또는 재배치를 통하여 영향을 받은 물품을 제거할 수도 있다.

소독처리: 효과적인 소독처리가 가능할 때 NPPO에 의해 이용됨

폐기(destruction): NPPO가 화물을 다른 방법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고려될 경우에 화물은 폐기될 수도 있다.

재선적 : 위반화물은 재선적에 의하여 그 국가로부터 제거될 수도 있다.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위반의 경우에, 조치는 국내 조치와 일관성이 있어야하며, 가능하다면, 허용치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규제되는 동등한 물질에 대해 허용된 경우, 예를 들면, 소독처리 또는 등급 낮추기(down grading), 또는 재분류를 통하여, 화물에 있는 병해충 정도가 요구되는 허용치에 적합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NPPO는 필요한 안내 사항(instructions)의 발행과 그 적용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시행은 통상 NPPO의 기능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기관은 이를 돕는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

NPPO는 정착이나 확산의 위험이 없는 경우(예: 소비용을 가공용으로의 용도 변화 또는 어떤 병해충이 정착이나 확산할 수 없는 생활사에 있을 때)와 같이, 또는 다른 일부 이유로 특별한 상황에서 식물위생조치가 기술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규제병해충이나 다른 위반사례에 대해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5.1.6.2 긴급활동

긴급활동은 다음과 같은 화물에서 검역병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병해충의 검출과 같은 새로운 또는 예기치 못한 식물위생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다.

- 식물위생조치가 정해지지 않은 화물
- 존재가 예상되지 않았고 식물위생조치가 정해지지 않은 화물 또는 다른 규제물품
- 수입상품과 연관된 수송수단, 저장장소 또는 다른 장소의 오염물

위반사례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식물위생 활동이 적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현행 식물위생조치를 수정하거나, 또는 검토와 완전한 기술적 정당성이 있을 때까지는 임시적 조치를 채택하게 될 수도 있다.

긴급활동을 요하는 일반적 상황은 다음을 포함 한다:

이전에 평가되지 않은 병해충. 목록에 있지 않은 생물체는 그들이 전에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식물위생조치를 요할 수 있다. 검출 시, 그 생물체는 NPPO가 병해충위험을 야기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 근거(preliminary base)로 규제병해충으로서 분류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충분한 기술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NPPO의 책임이다. 만일 잠정적인 조치가 정해졌다면, NPPO는 적절하다면 수출국 NPPO의 참여로 추가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며, 그 병해충의 규제 또는 비규제 상황을 적시에 정하기 위한 병해충위험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특정한 경로에 대해 규제되지 않은 병해충. 긴급 식물위생조치는 특정한 경로와 관련하여 규제되지 않는 병해충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규제되긴 하지만 이들 병해충은 그 목록이나 조치가 작성된 원산지, 상품 또는 상황이 예기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목록에 등재되지 않거나 특정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한 병해충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그 병해충의 발생이 장래에 예견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적절한 목록이나 다른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

적절한 분류동정의 미흡. 어떤 경우에는, 어떤 병해충은 그 병해충이 적절히 분류동정될 수 없거나 또는 분류학적으로 부적절하게 기술되었기 때문에 식물위생조치를 정당화 할 수 있다. 이는 표본이 기술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분류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분류동정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에 있거나, 또는 관찰된 생육단계가 필요한 분류 수준까지 동정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분류동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NPPO는 내려진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근거를 가져야한다.

병해충이 적절한 분류동정을 허용하지 않은 형태로(예 : 알, 어린 유충태, 불완전 형태 등)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분류동정을 하는데 충분한 표본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수출국과의 접촉은 분류동정을 돕거나 또는 추정적인 분류동정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태에서 그러한 병해충은 잠정적으로 식물위생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단 분류동정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PRA에 근거하여 그러한 병해충이 식물위생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NPPO는, 그러한 병해충을 분류상의 문제와 조치를 요하는 근거를 인지하면서, 관련 규제 병해충 목록에 추가하여야한다. 관심 있는 체약국은, 그러한 형태로 검출될 경우에 향후의 조치는 추정된 분류동정에 근거할 것임을 통보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향후의 식물위생조치는 확인된 병해충위험이 있고 수입된 화물에서 검역병해충의 존재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원산지와 관련하여만 취할 수 있다.

5.1.6.3 위반 및 긴급활동의 보고

검출이나, 위반사항이나 긴급활동의 보고는, 수출국이 수입 시 자국의 물품에 대해 취해진 식물위생조치의 근거를 이해하고 수출 시스템의 시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IPPC 체약국의 의무이다. 그러한 정보의 수집과 전달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5.1.6.4 철회 및 식물위생 규정의 수정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또는 중대한 위반 또는 긴급활동의 발생을 보장하는 검출 시, 수입하는 체약국의 NPPO는 수입을 허용하는 권한(예 : 허가)을 철회하고, 규정을 개정하거나, 개정된 반입절차 또는 수입금지와 함께 긴급 또는 잠정적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수출국의 NPPO는 변경 내용과 그 변경에 대한 논리를 신속히 통보받아야한다.

5.1.7 NPPO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허가 시스템

NPPO는 자체 통제와 책임 하에, 특정 한정된 기능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다른 정부기관, 비정부 기관, 에이전시 또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NPPO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상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밖에도, 절차에는 자격 증명, 감사, 시정조치, 제도검토 및 권한의 취소에 대한 절차가 개발되어야한다.

5.1.8 국제연락

체약국은 다음을 포함한 국제적인 의무(IPPC 제7조 및 8조)를 가진다.

- 공식적인 연락창구의 제공
- 특정한 반입지점의 통보
- 규제병해충의 목록, 식물위생 수입요건, 금지의 공표 및 전달
- 위반사항 및 긴급조치의 통보
- 요청이 있을 경우 식물위생조치의 근거 제공
- 관련 정보의 제공

행정적인 제도(arrangements)는 이들 의무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행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5.1.9 규제 정보의 통보 및 배포

5.1.9.1 신규 또는 수정된 식물위생 규정

새로운 또는 개정된 식물위생 규정 제안은 공표되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 (comments)와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주면서 관심 있는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1.9.2 결정된 규정의 배포

정해진 수입규정 또는 그 규정의 관련조항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는 체약국, 적절한 경우 IPPC 사무국 및 자국이 회원국인 RPPO(s)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다른 이해당사자들이(수입 및 수출업체, 기관 및 그들의 대표)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NPPOs는 발간 (publication)에 의해 수입규제 정보를 이용가능 하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인터넷 웹사이트와 IPPC의 국제식물검역포탈(IPP, <http://www.ippc.int>)을 통한 연계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도록 권장된다.

5.1.10 국내 연락

국가 내에서 협력활동, 정보공유 및 공동 통관 활동을 촉진하는 절차는 적절한 관련 정부 기관 또는 관청과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5.1.11 분쟁해결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이행은 다른 국가의 기관과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NPPO는 다른 NPPO와의 협의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절차와, 공식적인 국제분쟁 해결절차에 대한 요청을 고려하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그들 사이에 협의해야 하는”(IPPC 8.1조)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5.2 NPPO의 자원

체약국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NPPO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IPPC 4.1조).

5.2.1 직원, 훈련 포함

NPPO는:

- 적절한 자격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자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제공됨을 보장해야한다.

5.2.2 정보

NPPO는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정보가 사람들에게 이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 적절한 경우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측면을 포함한 지침 문서, 절차 및 작업 지시
- 그 국가의 식물위생 수입규정
- 생물정보, 기주범위, 경로, 전세계의 분포, 검출 및 분류동정 방법, 소독처리 방법을 포함한 규제병해충에 대한 정보

NPPO는 병해충위험분석 중에 병해충의 구분(categorization)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서 병해충의 존재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NPPO는 모든 규제병해충에 대한 목록을 유지해야한다. 규제병해충 목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SPM 19에 있다.

규제병해충이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분포, 병해충무발생지역, 공식적 방제, 그리고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경우에는 재식용 식물에 대한 공식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유지되어야한다. 체약국은 규제병해충, 예방과 방제수단에 관해 영토 내 정보를 배포해야하며, 자국의 NPPOs에게 그러한 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다.

5.2.3 장비 및 시설

NPPO는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장비와 시설이 이용 가능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 검사, 표본추출, 정밀검사, 예찰 및 화물 증명절차
- 정보에 대한 연락 및 접근(가능한 한 전자적 수단에 의해)

문서화, 의사소통 및 검토

6. 문서화

6.1 절차

NPPO는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지침 문서, 절차 및 작업 지시를 유지해야 한다. 문서화되는 절차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병해충 목록의 준비
- 병해충위험분석
- 적절한 경우 병해충무발생 지역, 병해충저발생 지역, 병해충무발생 생산 장소 또는 생산포장 및 공식적 방제프로그램의 설정
- 검사, 표본추출, 시험방법(표본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포함)
- 소독을 포함한 위반 시의 조치
- 위반사항의 통보
- 긴급활동의 통보

6.2 기록

적절할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ISPM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수입규정에 관한 모든 활동, 결과 및 결정은 기록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 병해충위험분석의 문서화(ISPM 11 및 관련 ISPMs에 따라서)
- 설정되었을 경우, 병해충무발생 지역, 병해충저발생 지역 및 공식적 방제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화 (병해충의 분포에 관한 정보와 병해충무발생 지역 또는 병해충저발생 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치 포함)
- 검사, 표본추출 및 정밀검사에 대한 기록
- 위반 및 긴급조치 (ISPM 13에 따른)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수입 화물에 대한 기록이 보관될 수도 있다.

- 특정한 용도를 가진 것
- 격리재배를 받거나 소독처리 대상
- 병해충 위험에 따라 식물위생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역추적 포함) 또는
-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7. 의사소통

NPPO는 다음 사람(기관)과 연락절차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한다.

- 수입자와 관련 업계대표
- 수출국의 NPPOs
- IPPC의 사무국
- 회원으로 있는 RPPOs의 사무국

8. 검토 기작

8.1 제도 검토

체약국은 자국의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이는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NPPO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나 사람의 활동을 감사하고, 필요시 식물위생법령, 규정 및 절차를 개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8.2 사례 검토

NPPO는 위반사항과 긴급조치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가져야한다. 그러한 검토는 식물위생조치의 채택이나 개정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부속서는 2017.4월 CPM 12에서 채택되었다.

이 부속서는 기준의 규정 부분이다.

부속서 1: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을 확인하는 합의사항 (arrangements) (2017)

수입국의 NPPO는 보통 수입국 도착지에서 화물의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확인한다. 그러나 무역의 물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 체약국들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NPPO에 의해 수행되는 확인 절차를 허용하는 합의에 대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합의는 이 기준에서 설명한 수출국에서 절차 감사(audits of procedures)와는 다르다(5.1.5.1).

수입국과 수출국의 NPPOs는, 자발적으로, 사안에 따라(case-by-case), 양측이 합의한 기간 동안, 수출국에서 특정 상품 화물에 대해 수행되어야할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합의문("합의문(arrangement)")을 작성하고 사용하여야한다.

이 부속서에서 설명된 합의문은 식물위생 조치로써 또는 무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써 설정되어서는 않된다.

합의문의 작성은 다음 상황에서 무역 물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 목적지에서 화물의 신속한 통관
- 입항지에서 화물의 거부와 관련된 조치가 매우 비싸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 입항지에서 검사가 상업적 포장(예, 상품이 개별적으로 포장되고 파괴적인 (destructive) 표본추출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상품의 품질(예, 상품이 매우 상하기 쉬움)에 나쁘게 영향
- 불합격을 다루려면 추가의 기반시설이 필수적인 경우

특정 규제물품에 대한 합의문 내용은 일단 작성되어야하고 식물위생 수입요건은 병해충위험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합의문은 이 기준과, 적절한 경우 ISPM 23(검사 지침)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정되고 공표된 식물위생 수입요건에 대한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합의문에 따라 확인된 화물은 입항지에서 다시 동일한 확인 절차 대상이 되어서는 않된다. 그러나 수입국의 NPPO는 입항지에서 서류 및 동일성(identity) 확인 같은 다른 확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수입국과 수출국 NPPOs간의 어떤 합의에도 불구하고, IPPC 1.2, 4.2(a), 4.2(b), 4.2(c), 4.2(d), 4.2(e), 4.2(g)와 5.1에 명시되어 있듯이,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은 수출국의 독점적인 책임이다. 이 합의문 하에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NPPO에 의해 수행되는 어떤 활동은 수출국의 법령의 대상이고 합치되어야 한다.

다음의 섹션들은, 수출국에서 수입국 NPPO에 의한 화물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합의문과 관련된 고려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한다.

1. 합의문의 일반적인 요건

합의문은 적정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 자문과 함께 수입국과 수출국의 NPPOs에 의해 합동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합의문의 최종내용은 적정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 자문과 함께 수입국의 수출국의 NPPO에 의해 합의되어야 한다.

합의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어야하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취급할 수 있는 기작이 있어야 할 수도 있다. 이행확인 활동을 감소시키는 조건과 합의문을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가 사안에 따라 설명되어야 한다.

2. 합의문을 작성하는 절차

합의문을 작성하는 절차의 단계가 아래 요약되어 있다.

2.1 제안

수입국 또는 수출국의 NPPO가 합의 요청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제안은 시작하는 NPPO 또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찾아낸 필요성에 대한 대응 일 수 있다. 이 제안은 합의문의 범위와 목적 또한 이유를 구체화해야하며 양쪽 NPPOs에 의해 동의되어야 한다.

이 제안에 고려할 수도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합의문의 시점 및 기간
- 확인 수준과 적정한 경우 특정한 화물과 규제병해충에 대한 표본추출 방법
- 합의문의 재검토와 평가를 개시할 수 있는 조건(criteria)
- 합의문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조건
- 자원(resources)의 가용성
- 프로그램 이행의 타당성

2.2 평가

합의의 제안을 받은 NPPO는 시의 적절하게 검토하고 반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안의 평가는 병해충위험 우려, 운영과 경제적 타당성과 규제적인 면에 대한 합의의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2.3 요인

합의를 제안하는 NPPO는 작성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안하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다른 NPPO도 작성을 지원할 것이 권장된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NPPO 간 합의가 필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화물의 표본추출과 검사
- 적정한 검사 시설
- 정밀검사 절차
- 화물의 완전성 확인
- 적정한 경우 화물의 이행을 확인하는 다른 단계별 시간과 장소
- 화물의 입항지 통보

- 식물위생증명서과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할지 여부
- 합의문 상의 문항들을 이행할 자격 있는 직원 가용성
- 이행 확인 활동의 시점
- 이 합의에 참가하는 재배자와 수출자들을 위한 절차 승인과 비용 또는 예상비용
- 직원 파견에 따른 숙소, 교통, 작업 건강, 안전, 보안과 다른 물류 면

이행 확인의 단계들은 합의에 들어가는 NPPO들에 대해 정해질 것이다.

2.4 기술적 요건

합의의 기술적 요건들은 사안에 따라 결정되고 작성되어야 하며 합의문에 설명되어야 한다.

합의문에는 다음에 대한 특정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법적, 규제적 권한
- 식물위생과 다른 관련 법령 또는 규정
- 역할과 책임(NPPO, 수출자, 재배자, 다른 관련 이해당사자의)
- 활동 시점과 기간
- 규제물품
- 모든 규제병해충과 수입국에 의해 요구되는 이들 병해충에 대한 관련 식물위생조치
- 표본추출, 검사, 정밀검사, 소독처리 확인과 화물의 완전성 확인 같은 식물위생 활동
- 화물의 이행 확인에 사용되는 기반시설과 장비
- 수입국의 NPPO에게 수출국의 NPPO가 유지하고 제공해야하는 문서화
- 재정적 면
- 위반사항의 통보
- 위반에 따른 화물의 시정조치
- 합의의 재검토 빈도와 시점
- 합의의 재검토, 평가, 일시적 중지 또는 종료로 결론날 수 있는 조건 (criteria)

3. 합의문의 이행

이 합의문에서 기술된 이행의 확인은 이행 조건 대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확인은, 특정 상품의 모든 수출되는 화물 또는 규제 상품의 분류 또는 선적 기간 중 정해진 시간동안에만 일부 비율만 확인될 수도 있다.

적용되는 이행 확인 활동은 합의문 하에 제한되어야 한다.

수출국에서 이행 확인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입 시 동일한 확인을 요구하면 안된다. 그러나 수입국에서 수행되는 다른 절차들은 다음일 수 있다:

- 화물 서류 및 완전성 확인
- 포장의 손상 여부와 화물의 식물위생 완전성의 손상 여부를 알기 위한 화물 검사
- 컨테이너 내 오염 병해충에 대한 화물 검사
- 수출국에서 검사 당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위험에 대응하는 화물 검사
- 합의가 수출국에서 검사 후 식물위생조치를 허용하는 경우 화물 검사 (예, 과실파리에 대한 수송 중 저온처리)

4. 합의문의 재검토

합의문의 효과는, 합의문을 개선하거나 완화 또는 종료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알고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재검토의 빈도와 시점은 합의문에 기술되어야 한다. 합의문의 일부 요인들은 다른 것들 보다 자주 검토되어야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기존의 합의문을 변경하는 것은 수입국의 NPPO 또는 수출국의 NPPO에 의해 제안될 수 있고 시행 전 양측 NPPOs의 합의가 필요하다.

5. 합의문의 종료

합의문 설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예, 양국 간 무역 물류의 변경) 또는 합의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합의문은 종료되어야 한다.

일단 합의문이 종료되면 확인 절차는 수입국에서 실시된다.